

의 안 번호	제2346~2347호
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2023. 1. 20.(금) 11:00
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# 심 사 보 고 서

안 건
총 2건(개정 조례안 2) : 붙임 참조



행정자치위원회

# 심사보고총괄

## I 심사대상 안건

- 의안번호 제2346호 : 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의안번호 제2347호 :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II 심사경과

의안번호	제출일	제출자 (발의자)	회부일	상정일 (제1차행자위)
제2346호	2023. 1. 3.	장성군수	2023. 1. 3.	2023. 1. 11.
제2347호	2023. 1. 3.	장성군수	2023. 1. 3.	2023. 1. 11.

## III 심사결과

안건	심사결과
장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## 1. 심사경위

- 제출일자 : 2023. 1. 3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장)
- 회부일자 : 2023. 1. 3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. 11.(제34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○ 제안이유

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활용한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,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, 콘텐츠 저작권 등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.

### ○ 주요내용

- 목적 확대 (안 제1조)
  - 장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
- 각종 행사 운영 및 보상 규정 구체화 (안 제5조)
  - 각종 공모전 개최 및 그에 따른 참여자 보상 근거 마련
- 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(안 제10조)
  -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 규정 신설

#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**

- 본 개정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,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행사 운영, 콘텐츠 저작권 등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비치)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# 1. 심사경위

- 제출일자 : 2023. 1. 3.
- 제출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1. 3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. 11.(제34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○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건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○ 주요내용
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변경 (안 제10조제4항)
  -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
  -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신설
-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면적 변경(안 제51조제1항)
  - 주거용 건축물 면적 85㎡이하 → 주거용 건축물 면적 60㎡이하
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계획 신설(안 제53조)
  -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내용
-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 계획 신설(안 제54조)
  - 지역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사업 내용

#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**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건축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비치)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의안 번호	제2348호
----------	--------

2023. 1. 20.(금) 11:00
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# 심 사 보 고 서

안 건
총 1건(동의안 1) : 붙임 참조



산업건설위원회

# 심사보고총괄

## I 심사대상 안건

- 의안번호 제2348호 :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(수의)  
동의안

## II 심사경과

의안번호	제출일	제출자 (발의자)	회부일	상정일 (제1차 산건위)
제2348호	2023. 1. 3.	장성군수 (건설과장)	2023. 1. 3.	2023. 1. 11.

## III 심사결과

안건	심사결과
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(수의) 동의안	원안가결



## 1. 심사경위

- 제출일자 : 2023. 1. 3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23. 1. 3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. 11.(제3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○ 제안이유

201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' 으로 추진한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이 '2018년 농림식품부 마을만들기사업 소득증대 사업' 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2022년에 완료하였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」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 면제를 동의받고자 함.

### ○ 주요내용

#### - 사용수익허가(수의) 내역

- 대상지 : 건물 1동 및 토지 4필지(진원면 선적리 133번지 등)
- 사용면적 : 건물 277.2㎡, 토지 735㎡
- 추정가격 : 총 440,426,100원(건물 197,643,600원 토지 242,782,500원)
- 사용자 : 불태산전통두부협동조합
-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5년

- 사용료 산정 내역

· 440,426,100원 × 50/100 × 1.1 = 24,223,436원(1년)

※월 분납시 : 2,018,620원

· 2021년 총소득 : 71,775천원(2021년 실질소득 1,809천원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본 동의안은, 행정재산인 친환경 농산물판매장을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하고 이를 법인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르면, 공유지인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성군 생산제품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임.
-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장성군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됨.
- 불태산전통두부협동조합은 군 생산제품을 생산·전시·판매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사용허가 하고,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회의록 비치)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